

제260회 임시회  
광진구의회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

2023. 3. 14.

**기획행정위원회**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24
----------	------

2022. 3. 14.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3. 2. 27.
- 나. 회부일자 : 2023. 3. 8.
- 다. 상정일자 : 2023. 3. 13.

## 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광진구청장

나. 제출사유

국가유공자 대상 수강료 감면을 그 유·가족까지 확대하여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기준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○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○ 기 타

1) 입법예고(2023. 1. 30. ~ 2. 20.) 결과 : 접수된 의견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이경수)

○ 의안번호 제2024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2023년 2월 27일 광진구청장이 제안하여 2023년 3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,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광진구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대상 수강료 감면을 그 유·가족(100% 감면)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제출되었음.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별표2 수강료 감면기준에서는 ‘국가유공자’ 본인에서 ‘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’ 까지 범위를 확대함.

#### ※ 서울시 자치구별 국가유공자 대상 수강료 감면 현황

(2023. 1월 기준)

구 분	감면기준		감 면 율	
	본인	본인 및 유·가족	100%	50%
현 황	3개구 (성동·광진·동대문)	22개구	14개구	11개구

- 광진구 국가유공자 현황: 1,659명(유가족 포함 시 2,805명으로 확대)

## ※ 서울시 자치구별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 기준

(2023. 1월 기준)

연번	자 치 구	국가유공자 감면 기준	감면비율(%)
1	종 로 구	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	100
2	중 구	국가유공자와 그 유족	100
3	용 산 구	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100
4	성 동 구	국가유공자	100
5	광 진 구	<b>국가유공자</b>	<b>100</b>
6	동대문구	국가유공자	50
7	중 랑 구	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	50
8	성 북 구	국가유공자와 그 가족	50
9	강 북 구	국가유공자와 그 유·가족	50
10	도 봉 구	국가유공자 및 가족	50
11	노 원 구	국가유공자와 그 유·가족	50
12	은 평 구	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	100
13	서대문구	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	100
14	마 포 구	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100
15	양 천 구	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100
16	강 서 구	국가유공자, 그 배우자, 선순위 유족	50
17	구 로 구	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100
18	금 천 구	국가유공자 또는 가족	50
19	영등포구	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100
20	동 작 구	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	100
21	관 악 구	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<개정 2022.10.27.>	100
22	서 초 구	국가유공자와 그 가족	50
23	강 남 구	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	50
24	송 파 구	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,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 수권유족 1명	50
25	강 동 구	국가유공자와 그 가족	100
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례안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함.

#### 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관계법령인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자의 수강료 감면대상자 중, 국가유공자 대상 감면기준을 그 유·가족까지 확대하고,
- 아울러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조례안의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면 광진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### 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### 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